

# 2023년(상·하반기) 청탁금지법 관련 상담내용 및 조치사항

우리시는 청탁금지제도 활성화를 통한 청렴문화 정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청탁금지법 관련 상담내용 및 조치사항을 공개합니다.

## □ 상담 19건

연번	상담내용	상담결과	조치사항
1	00구 0000000에서 회비로 100만 원을 제공하겠다고 하는데 가능한지?	<p>가.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p> <p>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 예외 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의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p> <p>나. 그 중 제8조제3항8호 그 밖의 다른 법령 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조항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통해 기부심사위원회를 거쳐 접수하는 방안을 권장하오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p>	
2	청탁금지법 상 선물, 음식 등 가액 범위 문의	<p>가.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p> <p>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 예외 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p>	

연번	상담내용	상담결과	조치사항
		<p>금품등의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p> <p>특히,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농수산물 10만원), 5만원 이하의 경조사비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p> <p>나. 그러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 등과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 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 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거나 직무상대가 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p>	
3	<p>OO대학교 공모전 심사 요청(사례금 받음)을 받았는데 외부강의 신고 대상인지?</p>	<p>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 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 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p> <p>나.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 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p>	

연번	상담내용	상담결과	조치사항
		<p>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등 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 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실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p> <p>다. 따라서 심사의 형태가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 형태라면 외부강의등 신고 대상이 됩니다.</p>	
4	<p>노조가입 조건으로 공무원 1인당 가입비 5만원을 납부하면 0000 법인 멤버십으로 자유이용권 20매를 한 장당 1만원에 예매할 수 있는데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되나요?</p>	<p>가.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 예외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의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농수산물 10만원), 5만원 이하의 경조사비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p> <p>나. 그러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 등과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 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 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 여부를</p>	

연번	상담내용	상담결과	조치사항
		<p>판단하여야 하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거나 직무상대가 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p>	
5	<p>직원 복지를 위해 000 2대 구매 시 구매한 고객들에게 사은품으로 10만원 상당 상품권 2매, 000000 2대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되나요?</p>	<p>가.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제8조제3항제8호에 의해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하나 이 경우, 일반인, 모든 공직자 등에 무료일 경우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정 공직자를 대상만으로 무료로 해주는 경우는 혜택에 해당되어 청탁금지법에 저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p>	
6	<p>직무관련자로부터 선물을 받으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p>	<p>가.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 예외 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의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농수산물 10만원), 5만원 이하의 경조사비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p>	

연번	상담내용	상담결과	조치사항
		<p>나. 그러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 등과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 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 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거나 직무상대가 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p>	
7	<p>친분이 있는 지인한테 생일에 기프티콘을 보내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되는지?</p>	<p>가.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을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 예외 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의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농수산물 10만원), 5만원 이하의 경조사비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p> <p>나. 그러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 등과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 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 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거나 직무 상대가 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p>	

연번	상담내용	상담결과	조치사항
8	<p>000000조합 000이며 00 관련 위원회 위원의 자녀 결혼식에 축의금을 내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되나요?</p>	<p>가. 위원회 위원의 경우 공무수행중에는 공무수행사인으로 공직자와 마찬가지로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p> <p>나.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 예외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의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농수산물 10만원), 5만원 이하의 경조사비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p> <p>다. 그러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 등과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거나 직무상대가 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p>	
9	<p>00법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으로 정기총회에 참석 시 외부강의 신고 대상에 해당되나요?</p>	<p>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 등“이라 한다)의</p>	

연번	상담내용	상담결과	조치사항
		<p>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p> <p>또한,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p> <p>나.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 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 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실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 입니다.</p> <p>다.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위촉되어 총회에 참석하는 것은 법령에 정한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청탁금지법상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p>	
10	직무관련자로부터 선물(○○1상자)을 받아도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p>가.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 예외 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p>	

연번	상담내용	상담결과	조치사항
		<p>품등의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 이하의 경조사비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p> <p>나. 그러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 등과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 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 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거나 직무상대가 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p>	
11	<p>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으로 부터 음료 1한잔을 받아도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p>	<p>가.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 예외 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의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농수산물 10만원), 5만원 이하의 경조사비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p> <p>나. 그러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 등과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 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 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p>	

연번	상담내용	상담결과	조치사항
		<p>하여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거나 직무상대가 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고·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p>	
12	<p>상위기관에 근무하는 친분이 있는 분이 승진을 했는데 화분을 보내도 되는지 ?</p>	<p>가.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 예외 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의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고·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농수산물 10만원), 5만원 이하의 경조사비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p> <p>나. 그러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고·의례의 목적은 공직자 등과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 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거나 직무상대가 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고·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p>	
13	<p>직무관련자료부터 추석 전에 선물을 받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되나요?</p>	<p>가.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p>	

연번	상담내용	상담결과	조치사항
		<p>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 예외 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의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농수산물 10만원), 5만원 이하의 경조사비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p> <p>나. 그러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 등과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 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 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거나 직무상대가 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p>	
14	공직자인 직무관련자에게 부조의 목적으로 경조사비 5만원을 초과해도 되는지 ?	<p>가.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 예외 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의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농수산물 10만원), 5만원 이하의 경조사비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p>	

연번	상담내용	상담결과	조치사항
		<p>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농수산물 10만원), 5만원 이하의 경조사비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p> <p>나. 그러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 등과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 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 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거나 직무상대가 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p>	
15	OOOOO 산하 위탁 국공립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청탁 금지법 적용 대상인지 ?	<p>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인 원장은 청탁금지법 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여 위탁받은 공무와 관련하여서는 청탁금지법 제5조부터 제9조 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어린이 집 소속 구성원인 교사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사회서비스원에서 직접 채용한 직원인 경우라면 공직자 등에 해당)</p>	
16	OOOOOOOOO 시험출제위원으로 가는 경우 외부강의 신고 대상인지?	<p>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p>	

연번	상담내용	상담결과	조치사항
		<p>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 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p> <p>나.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 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 등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실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 입니다.</p> <p>다. 따라서 시험출제 형태의 경우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 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라거나 의견 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 형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p>	
17	OOO이 외부강의 예정이신데 외부강의 신고 방법은?	<p>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들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들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 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p>	

연번	상담내용	상담결과	조치사항
		<p>나. 신고는 업무정책포털-행정업무-감사관리-외부강의등 신고내용을 입력하고 결재완료까지 받으시면 됩니다.</p>	
18	<p>000000으로부터 00000000사 책 출판 중 000,00000000 공간에 대한 원고를 부탁받았는데 외부 강의 신고대상인지?</p>	<p>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를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p> <p>나.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 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 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실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p> <p>다. 따라서 책을 출판하기위한 원고는 신문·잡지 등에 실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쓰는 기고형태로 보기 어려우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p>	

연번	상담내용	상담결과	조치사항
19	OOO 외부강의 예정이신데 신고방법은?	<p>가. 청탁금지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p> <p>나.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 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강의·강연은 일정한 주제에 대해 설명하여 가르치는 것으로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형태’ 인 경우이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실기 위하여 외부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p> <p>다. 신고는 업무정책포털-행정업무-감사관리-외부강의등 신고 내용을 입력하고 결제완료까지 받으시면 됩니다.</p>	